



노인을 위한 정보

이것은 노인을 위한 일련의 안내지 중 하나입니다.
다른 안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 학대와 방임 - 그것은 범죄인가?
- 노인 학대와 방임 및 형사사법제도
- 성인후견법 제3부에 의한 학대와 방임 신고하기
- 법적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
- 타인에게 자신의 일 관리에 도움이 되는 권한 부여하기

경찰에 범죄 신고하기 및 신고 시 취해지는 조치

경찰에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경찰에 학대행위를 신고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속상한 일일 수 있습니다.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면 특히 그러합니다. 대부분 노인은 신고 절차와 결과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경찰에 범죄를 신고하면 담당 경관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 중 일부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으나 가능하면 많은 정보를 주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경찰관에게 하는 말은 **진술서**라고 하는 종이에 기록됩니다.

협박을 받고 있는지 또는 위험에 처해 있는지 경찰관에게 꼭 말씀하십시오.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경찰관은 이를 도울 수 있거나 도울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은 종종 피해자 서비스 담당자들에게 범죄 피해를 당한 노인들을 지원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경찰에게 진술을 마치면 서명을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진술서 사본을 하나 달라고 하십시오. 경찰관의 이름과 번호를 꼭 받아두고, 가능하면 미래 참조용으로 경찰 보고서 번호를 받아두십시오. 나중에라도 미처 말씀하지 못한 무언가가 생각나시면 담당 경관에게 연락하여 이를 알려주십시오.

경찰에 신고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관이 신고 내용을 수사합니다.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되면 경찰은 검사를 위하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검사는 경찰 보고서를 보고 범죄 혐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혐의자가 기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경찰과 검사는 신고자에게 이를 알려줍니다. 한 주 이상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으면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후속조치 여부를 물으십시오. 피해자 서비스 담당자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봐 드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링크(VictimLINK)에 1 800 563-0808로 연락하시면 거주지 피해자 서비스 프로그램의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고 아울러 다른 서비스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질병이나 부상, 장애가 있어 경찰에 진술하지 못하는 범죄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경찰은 그래도 다른 증거를 찾아 피해자의 증언 없이도 기소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증거에는 무기, 불법 취득 재산, 증인의 진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범죄 피해를 당한 많은 노인들이 하는 또 다른 질문은 “기소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입니다. 이 질문은 피고가 노인의 친족이거나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인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경찰이 범죄 혐의자를 체포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재범을 막거나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목적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한 인물이거나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경찰은 그를 가두어 둘 수도 있습니다.

보석적부심(bail hearing)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누구나 보석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판 때까지 아무도 자동으로 구속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석적부심은 재판을 받을 때까지 풀어달라는 신청입니다.

피고는 구속된 후 24시간 이내에 보석적부심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장이나 치안판사가 보석석방명령이나 석방명령을 내리며 여러 종류의 보석 중 하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석석방명령 중 가장 간단한 형태는 **출정서약(promise to appear)(출정보증(undertaking to appear))**이라고도 함)입니다. 피고에게 전과가 없거나 있어도 경미한 것이라면 이런 형태의 보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정보증에는 일부 조건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는 보석감독관에게 보고하거나, 특정 주소에 살기로 동의하거나, 피해자나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겠다고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진출두서약(recognizance)

또 다른 종류의 보석은 자진출두서약입니다. 이것은 피고가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일정 금액의 돈을 내겠다는 동의입니다. 자진출두서약에는 여러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보석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내야 하는 일정 금액을 정하는 자진출두서약
-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 내야 하는 금액 이외에 현금 보증금이 있는 자진출두서약
-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일정 금액을 내기로 동의하는 경우의 보증인이 있는 자진출두서약

피고가 이 중 어느 것으로도 석방되지 않고 구금되면, 검사는 **이유제시 심리(show cause hearing)**를 행하여 예비 심문이나 심리가 있을 때까지 피고를 석방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근신약정서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810조에 의하여, 가정이나 동네에서 폭력이나 피해를 방지하려고 **근신약정서(peace bond)** 명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신약정서에는 피고가 길게는 1년까지 자숙하고 근신하도록 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신약정서의 통상적인 조건은 범죄 혐의자가 범죄 피해자와 일절 접촉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화 통화, 편지, 방문 등은 피해자가 허락하여도 불허됩니다. 피고가 근신약정서의 어느 한 조건이라도 어기면 범죄 혐의가 추가되어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근신약정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누군가 자신을 해치거나 재산에 피해를 주겠다고 심각하게 협박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근신약정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협박이나 폭행의 내용을 가능하면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협박이 여전히 계속되면 매번 그 시간과 협박에 사용된 말을 정확히 기록하여 두십시오.

경찰이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보내면 검사는 근신약정서가 필요한 상황인지 결정합니다. 검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협박자는 근신약정서의 조건에 동의하고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동의하지 않으면 심리 날짜가 잡힙니다.

경찰과 검사를 통하여 근신약정서를 받지 못하면 주법원 형사사건부로 가서 치안판사에게 근신약정서 발부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근신약정서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당신을 보호하는 근신약정서와 접근금지명령(For Your Protection: Peace Bonds and Restraining Orders)* 책자를 참조하십시오. 이 책은 '피해자 서비스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부'(Victim Services and Community Programs Division)에 604-660-5199로 전화하여 요청하거나 www.pssg.gov.bc.ca에서 다운로드하십시오.

일부 형사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더 심각한가요?

캐나다형법상의 범죄를 더욱 잘 이해하려면 형사기소에 3개의 범주가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약식기소 범죄(summary offence)**, **정식기소 범죄(indictable offence)** 및 **약식 또는 정식으로 기소될 수 있는 범죄(offences which can be treated as either summary or indictable)**입니다.

정식기소 범죄는 약식기소 범죄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은 정식기소 범죄인 반면 배회나 소란유발은 약식기소 범죄입니다. 약식이나 정식으로 기소될 수 있는 범죄에는 폭행, 성폭행 등이 해당됩니다. 범죄 혐의자에 대한 기소를 약식으로 하느냐 정식으로 하느냐를 결정하는 사람은 검사입니다.

법과 자신의 권리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면, 로우어 메인랜드에 사시는 분은 B.C. CEAS에 604-437-1940으로 연락하십시오. 주 내 그 이외 지역에서는 무료전화 1-866-437-1940을 이용하십시오.

이 안내지는 프레이저보건공단(Fraser Health Authority)의 써리보건보조금(Surrey Health Grant)을 받는 지역사회의 재정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